

『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2016년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
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사각지대로 제기되어

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 민간의 공용화장실을 남녀 분리 시 분리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1조의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,
안 제2조제3항, 제4조제1항, 제4조제6항에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간화장실 용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